

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'99-56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10. 23.
제출자 : 거창군수

폐지이유

-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계에 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가 '98. 3. 12 조례 제2555호로 제정하여 군에 권한위임하였으므로 현행 군조례는 존치가 불필요 하므로 폐지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로 현행 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

폐지근거

- 농지개량조합법 (법률 제5077호 '95. 12. 29)
-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 (조례 제2555호 '98. 3. 12)
- 행정 규제개혁 대상사무 일제정비계획

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